

발 간 등 록 번 호

11-1613000-003189-01

# 총사업비 실무 매뉴얼

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

2023. 3.



국토교통부

업무흐름	주요 확인사항	비고
<p><b>총사업비 관리대상</b> 관리지침 제3조</p>	<p><b>[대상사업 여부 확인]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업기간 2년 이상</li> <li>② 총사업비 500억이상(국고 300억원 이상) 토목 및 정보화사업</li> <li>③ 총사업비 200억이상(국고 무관) 건축 및 R&amp;D사업</li> <li>④ 프로그램 예산구조체계의 “세부사업” 기준</li> <li>⑤ 국고 정책지원사업, 민간투자사업, 단순개량 또는 유지·보수사업 (예타 면제 한정) 등은 제외 단, 단일사업장 기준 500억원 이상 유지·보수사업(내역, 내내역)은 관리대상 포함</li> </o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토교통부 자체 관리대상 기준(자율조정 절차 준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토목사업</li> <li>·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건축사업</li> </ul> </div>	<p>조정지침 제3조, 제4조</p>
<p><b>총사업비 관리유형</b> 관리지침 제97~106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계속)</p>	<p><b>[협의조정]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해당실국 및 재정담당관의 사전 검토 후, 기재부와 협의·조정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실국과 재정담당관에 동시에 총사업비 조정 요청</li> <li>- 공문과 디브레인으로 동시에 요청 (조정요구서 첨부)</li> </ul> </li> </ol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</div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 전체 사업추진 단계에 걸쳐 기재부와 협의·조정</li> <li>③ 총사업비 협의조정 요구는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, 총사업비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의</li> </o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리지침 위반사항 제재(관리지침 제111조~11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재부와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 증액하거나 ‘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’에 허위등록, 미등록·지연등록, 관련 법령 또는 지침 위반 시 기본경비 삭감, 관계공무원 제재 가능</li> </ul> </div>	<p>관리지침 제108조</p>

업무흐름	주요 확인사항	비고
<p><b>총사업비 관리유형</b></p>	<p><b>[자율조정]</b></p> <p>① 자율조정 대상 항목에 대해 재정담당관 사전검토, 해당실국 검토·조정, 기재부 사후점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실국이 총사업비 요청 건에 대한 최종 자율조정 승인</li> <li>- 승인 시 자율조정 결과를 재정담당관에 통보하고,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에 입력</li> </ul> <p>② 「총사업비 관리지침」 별표2의 붙임3에서 규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자율조정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토부 자체 관리대상(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미만 토목사업 등)은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조정</li> </ul> <p>③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서만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일부항목과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한 물가 변동 반영 등은 시공단계 이전 자율조정 가능</li> </ul> <p>④ 총사업비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</p> <p>⑤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가변동, 보상비, 시설부대경비 등 일부항목 자율조정 가능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낙찰차액 감액(관리지침 제26조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고,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낙찰차액을 구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 감액하여야 함</li> </ul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자율조정 한도액(관리지침 제102조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</li> <li>· 자율조정 한도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협의조정 시행</li> </ul> </div>	<p>조정지침 제4조</p>

업무흐름	주요 확인사항	비고
<p><b>총사업비 신규등록</b></p> <p>관리지침 제107조</p>	<p><b>[신규등록 시기]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정기)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록</li> <li>② (추경) 추경예산 반영 사업은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</li> <li>③ (수시) 사업추진 중 관리대상 사업으로 변경 시(사업비 증가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리대상 사업으로 변경 예상 시 사전에 신규등록 가능</li> </ul> </li> </o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규등록 업무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→해당실국→재정담당관→기재부</li> <li>· <b>대상기관에서 재정담당관으로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</b></li> <li>· 공문과 디브레인 동시 요청(신규등록보고서 첨부)</li> </ul> </div> <p><b>[등록 및 정비기준]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최초등록) 당해연도 예산에 사업 예산(타당성조사비, 설계비, 보상비, 공사비 등) 최초 반영 시</li> <li>② (완료) 사업추진 중 총사업비 감액 등의 사유로 관리대상 규모 이하로 변경된 사업 및 전년도 사업이 완료된 사업</li> <li>② (이월) 사업 종료년도까지 정산 등이 완료되지 않아 완료보고가 어려운 경우에 디브레인 관리기간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부대공사 등 잔여공사 추진 등으로 사업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이 아닌 별도 협의조정을 통해 사업기간 연장</li> </ul> </li> </o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일제정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매년 1월 기재부 주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해 신규등록, 원료 보고(제외포함), 연이월 등 일제정비</li> </ul> </div> <p><b>[신규등록 시 총사업비 산정범위]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예타 대상) 예타조사 후 당해 사업의 예산이 최초 반영(국회확정 기준)된 시점의 예타조사 총사업비(면제사업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)</li> <li>② (예타 미대상) 당해 사업의 예산이 최초 반영된 시점의 총사업비</li> <li>③ 사업추진 중 관리대상 사업으로 변경 시 변경사업비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시점의 총사업비</li> </o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반영된 예비비 제외 시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본계획의 수립, 기본설계의 시행 등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비용 항목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제외</li> </ul> </div>	<p>조정지침 제4조</p>

업무흐름	주요 확인사항	비고
<p><b>예비타당성 조사</b> 관리지침 제54조</p> <p>↓</p> <p><b>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</b> 관리지침 제13~14조</p> <p>↓</p> <p><b>기본설계</b> 관리지침 제16~18조</p> <p>↓</p>	<p>① 예타 면제사업은 물가·지가 상승 및 관련 법령의 제·개정, 안전강화, 관계부처 협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반영 시점의 최초 사업규모와 총사업비를 유지하여야 함</p> <hr/> <p><b>[타당성조사]</b></p> <p>① 사업규모, 총사업비, 사업기간 등이 예타조사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총사업비 변경 협의</p> <p><b>[기본계획 수립]</b></p> <p>① 기본계획 수립 후 고시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</p> <p>② 예타 또는 타당성조사 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(물가·지가 제외)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 첨부 - 100분의 10 미만 증가 시에도 공종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검토의견서 첨부할 수 있음</p> <p>③ (일괄입찰사업) 기본계획 수립 후 발주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 - 전체 사업물량 중 일부 공종 일괄입찰사업 추진할 때도 동일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요예측 재조사(관리지침 제34~43조)</p> <p>· 최초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측한 수요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시행 ☞ 최초 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 시 타당성재조사 시행</p> </div> <hr/> <p>① 대형 신규구조물 설치, 일부구간 차로수 변경, 신규내역·공종 추가,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 등은 총사업비 사전협의 시행</p> <p>②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 - (일반) 설계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첨부 - (건축)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 첨부 - (R&amp;D) 과기부 및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 시행</p> <p>③ 기본설계 완료 후(미시행 시 실시설계 완료 후) 토지 10필지 이상,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의뢰 -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3필지 이상이면 의뢰 - 보상평가액이 지가상승률을 제외하고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, 보상평가서 재검토 시행</p>	<p></p> <p>관리지침 제31조</p> <p>관리지침 제57조</p>

업무흐름	주요 확인사항	비고
<p><b>실시설계</b> 관리지침 제19~24조</p> <p>↓</p>	<p>① 대형 신규구조물 설치, 일부구간 차로수 변경, 신규내역·공중 추가,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 등은 총사업비 사전협의 시행</p> <p>②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계약 의뢰 이전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평, 교평, 지자체 협의결과 등 반영</li> <li>- 설계VE 1회 이상 진행(건축사업은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을 조달청과 협의)</li> <li>- 조달청 단가적정성 검토 시행(단, 조달청 계약의뢰 사업은 미시행)</li> <li>- (건축)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시행(단가적정성 검토 병행 가능)</li> </ul> <p>③ (일괄입찰사업) 사업규모, 총사업비, 사업기간 등 변경 필요 시 최종 낙찰자 선정 이전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(대안입찰 동일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설계의 적정성 검토(관리지침 제57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재부는 기본계획, 기본설계, 실시설계 단계 총사업비 협의 시 설계의 적정성 검토 요청 가능</li> <li>☞ (검토) 국토부, 행안부, 과기부, 조달청, 공공기관</li> <li>· 건축, R&amp;D사업은 기본설계(계획설계·중간설계) 완료 후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에게 설계의 적정성 검토 의뢰</li> <li>☞ 건축사업의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쳤거나 조달청 '맞춤형 서비스' 사업은 생략 가능</li> </ul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타당성 재조사(관리지침 제44~53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추진 전단계에 걸쳐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</li> <li>☞ 총사업비 증가 등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행</li> </ul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(관리지침 제49조의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시행 가능</li> </ul> </div>	<p>관리지침 제57조</p> <p>관리지침 제32조</p>
<p><b>발주 및 계약</b> 관리지침 제25~26조</p> <p>↓</p> <p>(계속)</p>	<p><b>[조달계약]</b></p> <p>① 기재부와 협의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의뢰</p> <p>② 조달청은 조달계약 의뢰받은 총사업비가 기재부와 협의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입찰공고 이전에 기재부와 협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출연·출자기관 등이 자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도 동일</li> </ul>	

업무흐름	주요 확인사항	비고
<p><b>발주 및 계약</b> 관리지침 제33조</p> <p>↓</p> <p><b>시공단계</b> 관리지침 제27~30조</p> <p>↓</p> <p><b>완료보고</b> 관리지침 제110조</p>	<p><b>[낙찰차액의 감액]</b></p> <p>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납(자율조정 절차) - 총사업비가 국고, 지방비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분담 비율에 따라 낙찰차액을 구분하여 반납</p> <p>②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</p> <p>③ (일괄입찰사업) 사업자 선정 후 30일 이내 낙찰차액 반납</p> <hr/> <p>①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 -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원 이상 설계변경 시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 의뢰</p> <p>② 다음연도 완공사업은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 (자율조정은 5월31일까지 완료)</p> <p>③ 완공 연도에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조정협이나 자율조정은 허용되지 않으며, 법정경비 반영 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 가능</p> <p>④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복구에 필요한 선조치 부분은 자율조정 총사업비 조정 가능</p> <p>⑤ (일괄입찰사업) 발주처 또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, 천재·지변, 법령 제·개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계약금액 증액 가능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(관리지침 제58조)</b></p> <p>· 기재부는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협의 시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한 검토 요청 가능</p> <p>☞ (검토) 국토부, 행안부, 과기부, 조달청, 공공기관, 설계전문가</p> </div> <hr/> <p>① 사업 완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필요사항 입력 후 '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완료 보고서' 제출 - 준공내역서 등 총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</p>	<p>관리지침 제33조</p>